

February  
2025

# NEWSLETTER

국제중재 그룹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Group

## CONTACT

## 흠결 있는 중재합의(Pathological Arbitration Agreement) 해석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변호사 박은영

T: 02.6386.6212  
E: [eyp@leeko.com](mailto:eyp@leeko.com)

최근 대법원은 국제거래 계약에서 복수의 언어로 규정된 중재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도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인정된다면 유효한 중재합의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 한상훈

T: 02.772.4309  
E: [sanghoon.han@leeko.com](mailto:sanghoon.han@leeko.com)

### 1. 사실관계



외국변호사 윤새봄

T: 02.6386.7902  
E: [grace.yoon@leeko.com](mailto:grace.yoon@leeko.com)



변호사 김새미

T: 02.772.5902  
E: [saemee.kim@leeko.com](mailto:saemee.kim@leeko.com)

"8. 통제/법률(Arbitration)

본 합의는 한국법률이나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Claims or Differenc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or a breath<sup>2</sup> 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Korean law 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2. 법원의 판단



변호사 구현양

T: 02.6386.6629  
E: [hyunyang.koo@leeko.com](mailto:hyunyang.koo@leeko.com)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전속적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46426 판결). 원심은 먼저 이 사건 조항을 "한국법률의 통제 또는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당사자들이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법률의 통제" 부분은 당사자들의 준거법에 대한 합의에 해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법에 따른 재판 청구를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규정한



### 외국변호사 신정아

T: 02.6386.6232  
E: [elizabeth.shin@leeko.com](mailto:elizabeth.shin@leeko.com)



### 변호사 유바미

T: 02.6386.6267  
E: [bami.yoo@leeko.com](mailto:bami.yoo@leeko.com)

것이고,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 부분은 중재에 따른 분쟁해결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i) 국문의 “~이나”와 영문의 “or” 부분이 오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접속사가 “또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점, (ii) 당사자들이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중재기관을 명시할 정도로 중재절차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분쟁해결수단이 중재에 한정된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iii)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써 재판 청구를 배제한다는 문구를 당사자들이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상대방이 중재제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효력이 있는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이 전속적 중재합의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영문 표제는 중재를 의미하는 “Arbitration”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영문 조항에는 “shall be finally settled by [...] Arbitration”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i) “한국법률의 통제” 부분은 그 문언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한 합의로만 읽히고 재판절차를 포함한 대한민국법에 따른 분쟁해결수단을 수용한 합의로 보여지지 않는 점, (ii) 중재조항에서 언급하는 특정 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면 중재합의는 유효한 점, (iii) 재판절차를 분쟁해결의 수단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선택적 중재조항에 합의한 것이라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은 전속적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3. 시사점

대법원은 이전에도 비록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조항의 해석을 통해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인정되는 한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더 나아가 중재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흔결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복수의 언어가 상호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중재합의로 보기기에 비록 다소 흔결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인정되는 한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더욱더 중재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 법원이 국제중재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소 흔결이 있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적 중재조항을 분쟁해결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 선택적 중재조항이 전속적 중재합의로 해석되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제중재 그룹은 국제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분쟁 사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쟁의 개시단계부터 집행 등의 단계까지 모든 절차에서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분쟁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제중재 그룹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분쟁의 종류 및 단계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원고는 원래 다른 독일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피고와 합병을 하며 피고가 공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 계약의 원문은 "breath"라고 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breach"의 오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